

## 제 1 장 일반규정

### 제 1.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

양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24 조 및 GATS 제 5 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.

### 제 1.2 조 목적

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상품무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
- 나.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
- 다. 양 당사국의 경제에서의 경쟁,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
- 라. 지식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, 그리고
- 마. 이 협정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한 틀을 수립하는 것

### 제 1.3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대한민국-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.
2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협정은 상품·서비스·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3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.

### 제 1.4 조

## 의무의 범위

이 협정에 따른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,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,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비정부 기관에 의한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.

### 제 1.5 조 일반 정의

이 협정의 목적상,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,

**농업에 관한 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「농업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반덤핑 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「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대한민국-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**이란 「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」과 동 기본협정 제 1.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.

**세관당국**이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 관세청,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나. 베트남의 경우, 베트남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

**관세**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,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가. 동종의, 직접적으로 경쟁적인,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,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
- 나. 제 7 장(무역구제)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
- 다.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
- 라.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, 또는

다. 「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」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  
진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

**관세법 및 규정**이란 관세·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, 또는 금지·제한 및 각 당사국  
관세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 
상품의 수입, 수출, 통과 또는 환적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운영하고  
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.

**관세평가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「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 
관한 일반협정 제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일**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.

**기업**이란 회사·신탁·파트너십·단독소유기업·합작투자·협회 또는 유사한  
조직을 포함하여,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 
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,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 
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.

**기존의**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.

**GATS**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나 의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을  
말한다.

**1994 년도 GATT**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 
「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을 말한다.

**상품**이란 모든 제품, 생산품,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.

**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**란 시행중이고 그 후 수시로 개정된 「통일 상품명 및  
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 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 
및 부호체계의 상품분류체계를 말한다.

**공동위원회**란 제 17.1 조(공동위원회)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.

**법인**이란 회사, 신탁, 파트너십, 합작투자,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,  
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
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.

**조치**란 법, 규정, 규칙, 절차, 결정,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 
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.

**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**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, 그리고

- 나.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

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개정된 「국적법」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, 그리고
- 나. 베트남의 경우, 베트남 헌법과 개정된 「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」 상 의미에서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

**원산지 상품**이란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에 따라 원산지 제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춘 제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.

**인**이란 자연인, 또는 법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.

**특혜관세대우**란 원산지 상품에 대해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.

**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「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「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영역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한국 주권하의 육지, 해양 및 상공,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, 그리고
- 나. 베트남의 경우,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,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, 내수,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, 영해 밖에 있는 대륙붕,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해양지역

**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다의 「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**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.

**세계무역기구**란 세계무역기구(WTO)를 말한다. 그리고

**세계무역기구협정**이란 1994 년 4 월 15 일에 채택된 「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을 말한다.